

WM라운지

CRS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과 자진신고제도

정태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입력 2016-01-18 09:16:56



최근 경제뉴스를 보면 미국의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거리다. 최근 중국증시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증시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을 보면 과한 우려만은 아닌듯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세계경제와 동조화되고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는 현상은 이미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국경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도들 중에 조세-금융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있다면 '다자간 협정(CRS)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일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과세의 국경도 사실상 사라지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다자간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과 오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해당국의 금융회사에 개설된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상호교환에 앞서 금융회사들의 금융정보 수집이올해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미국에서 시행하는 'FATCA'라는 제도와 유사한 것인데, 이로써 우리나라가 금융정보를 수집해서 상호교환하는 외국 국가가 미국 뿐만 아니라 다자간협정에 서명한 국가들로 확대된다. 현재 다자간협정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약속한 국가들은 99개국에 이른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OECD 국가들 뿐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싱가포르와 홍콩은 다자간협정 체결 전이나 시행을 약속한 상태) 등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들은 거의 모두 포함 돼 있다. 협정국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국가가 미국으로 한정된 FATCA보다 파급효과가 오히려 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은 FATCA와 마찬가지로 '상호 교환'의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세청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거주자(해당국의 세법정의에 따른다)의 금융정보를 해당 외국의 과세당국에 통보해야 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금융회사에 계좌를 보유하고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정보 역시 통보받게 된다. 국세청은 FATCA와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실상 전세계 모든 국가에 소재한 우리나라 국민의 역외 소득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의 시행을 공표했다. 이 제

도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국세청에 신고했어야 하는 국외소득의 미신고분에 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의 기회를 준 것이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관련법령상 신고의무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나 제재조치에 관해 감면 등의 관용조치를 취할 방침기로 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는 외국 계좌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혹여 놓친 점이 있었다면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자진신고제도는 올해 3월 31까지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